



학생지도위원회 규정

제정일	1993.12. 7
개정일	2016. 5. 1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학생서비스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학칙 8장에 의거 학생회 및 학생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구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2.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생 징계에 관한 중요 사항 중 교수회의에 상정여부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처·국장 및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9. 2.13, 2016. 5.1)

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6. 5. 1)

제 4조 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
제 5조 (회의소집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 (개정 2009. 2.13)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단,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/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)

제 6조 (회의록 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9. 2.13)

②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 7조 (집행) 본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집행한다. (개정 2009. 2.13)

제 8조 (운영세칙 등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